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11451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1. 6.

판결 선고 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4,581,460원 및 그중 41,677,124원에 대하여 2024. 3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혁재

별지